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위탁선거관리 협의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 ❖ 「교육공무원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는 위탁단체(추천위원회)에서 주관함.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칙”으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규정”으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은 “세칙”으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로 약기함.

I. 법규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

1. 선거일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2021. 6. 30.(수)	2021. 7. 7.(수)	추천위원회안

[착안사항]

- ▣ 임기만료일 : 2021. 10. 19.(화)
- ▣ 선거실시가능기간 : 2021. 6. 21.(월) ~ 8. 20.(금)
- ▣ 가급적 여름방학 시기를 피하여 공개토론회 등 선거운동에 있어 제외되는 선거인이 없도록 선거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관련법규 등
 - ‘선거일은 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법 §14②)
 - ‘선거일은 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 속한 날 중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규정 §16②1)

2. 선거기간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2021. 6. 17.(목) ~ 6. 30.(수) (14일간)	2021. 6. 24.(목) ~ 7. 7.(수) (14일간)	추천위원회안

[착안사항]

- ▣ 공직선거(대통령선거 제외) 및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 : 14일(「공직선거법」 제33조①2, 법 §13①1)
- ▣ 후보자등록기간 : 2021. 6. 22.(화) ~ 6. 23.(수)(2일간)

▫ 관련법규 등

- ‘선거기간은 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법 §13①2, ②)
-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법 §18①, 규정 §19①)

3. 선거인명부 작성기간·확정일 및 열람기간

구 분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작성기간	2021. 6. 11.(금) ~ 6. 14.(월) (4일간)	2021. 6. 18.(금) ~ 6. 21.(월) (4일간)	추천위원회안
열람기간	2021. 6. 15.(화) ~ 6. 18.(금) (4일간)	2021. 6. 22.(화) ~ 6. 25.(금) (4일간)	추천위원회안
확정일	2021. 6. 23.(수)	2021. 6. 30.(수)	추천위원회안

[착안사항]

- 작성권자 : 추천위원회
- 작성기간 :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
- 선거일 공고일 : 2021. 6. 17.(목) (기한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 열람기간
 - 공직선거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규 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내에서 정하는 기간
- 확 정 일 : 선거일전 7일
- 관련법규 등
 - 작성기간 및 확정일
 - ‘추천위원회는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법 §15①)
 - ‘추천위원회는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7일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규정 §18①)
 - ‘선거일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관위가 공고하여야 한다’(법 §14⑥)
 -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40①)
 -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중에 열람 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16①)
 - ‘추천위원회는 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한 열람 기간 및 열람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규정 §18③)

4.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이용 투표·개표 실시 여부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투표·개표 실시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착안사항]

- 결선투표 사유 발생 시 투표안내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야 1차투표·결선투표 및 개표를 당일에 완료 가능함
-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시 투표참여율 및 투·개표의 신속·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위탁경비 절감 효과도 있음
- 최근 타 국립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도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투·개표를 실시하는 추세임('19년 : 대구교대·서울과학기술대, '20년 : 경북대 등)
- 관련법규 등
 - '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법 §69①)
 - '선거는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로 한다. 투표는 위 두 방법을 병행하거나 단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정 §33①)

5. 투표시간

구 분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투표시간	1차 투표 2021. 6. 30.(수) 09:00 ~ 13:00 (4시간)	2021. 7. 7.(수) 09:00 ~ 13:00 (4시간)	추천위원회안
	결선투표 2021. 6. 30.(수) 15:00 ~ 18:00 (3시간)	2021. 7. 7.(수) 15:00 ~ 18:00 (3시간)	추천위원회안

[착안사항]

- 경북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2020. 7. 15.실시) : 1차(11:00~14:00, 3시간), 결선(16:00~19:00, 3시간)
- 결선투표는 사유 발생 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득표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함(규정 §35②)
- 관련법규 등
 - '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법 §44①2)

Ⅱ. 선거관리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구 분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투표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명부 상 주소를 “대학교”로 기재한 선거인의 경우 우편 이용 도착한 투표안내문이 선거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에서 지원·협조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선거에 관한 사항 홍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수막·입간판·전광판·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학교소식지 등 이용 선거인에게 홍보·안내 (선관위 요청시) ※ 추천위원회 자체시행 시 홍보문안은 선관위와 상의 후 시행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Ⅲ. 그 밖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 분	선관위안	추천위원회안	결정안
선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선거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선거인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명부 대조와 투표안내문 발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등 정확한 작성 협조 (명부 전산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봉인 후 인편 제출 또는 금오공대 공식 메일 계정을 이용 제출)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피선거권자의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기준일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일 현재 후보자등록 당시 	선거일공고일 현재	추천위원회안

아니한 사항의 자격산정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공고일 현재 •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날 현재 		
후보자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의 목록을 구분하여 제출(기한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30일까지)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선거공보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위원회가 우편 등 이용 발송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추천위원회가 주관·진행하는 선거운동관련 결정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가 선거사무 안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다음 사항 통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공보(벽보) 작성방법, 작성·제출수량 등, 발송(첨부)결과 - 합동연설회 개최 일시·장소, 후보자 1인당 발표시간 - 공개토론회 개최 횟수·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선거운동 관련 추천위원회가 정한 사항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투표에 따른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 위탁관리 협약'은 본 협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별도 협약서 체결을 갈음함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기탁금 반환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다음 날부터 7일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탁금 반환 계좌는 후보자명의로 개설하여 후보자등록시 제출 ※ 금오공대 발전기금 귀속 계좌는 선거일 후 통보 협조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한도액	3천만원 범위내 (사유발생시 납부 요구)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단속·조사 등 관련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단속·조사 및 예방 활동과 관련한 협조 요구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선거관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경비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부담 • 경비산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위탁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에 의하며, 경비산출 후 별도 통지(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경비 포함) • 납부기한 : 선관위에서 별도 정하는 기한까지 • 집행잔액 반납 :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예정자 현황 제출 • 각 선거인별 대표자 현황 제출 (비상연락망 구축용)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협의사항 변경 및 추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환경 변화로 협의한 사항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이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관위가 정하기로 함 • 본 협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추가 협의 하여 정함 	선관위안과 같음	선관위안

※ 첨부 :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 위탁 관리 협약서

본 협의를 통해 약정한 내용은 이번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으며, 양자는 위 협의서의 내용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본 협의를 충실히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협의서 2부에 각각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6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낙렬 (인)

사무국장 김명수 (인)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위탁관리 협약서

I. 대표선거명 :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 제1선거명 :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교원)
- 제2선거명 :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직원)
- 제3선거명 :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조교)
- 제4선거명 :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학생)

※ 결선투표 사유 발생 시에도 동일 적용

II. 온라인투표·개표 이용 기간 등

- 선거(투표)일시 : 1 차투표 : 2021. 7. 7. 09:00 ~ 13:00
- 결선투표 : 2021. 7. 7. 15:00 ~ 18:00
- (투표방법) 선거인 1인 1표(투표결과 집계 후 선거인 신분별 반영비율 계산)
- (투표매체) 웹투표(휴대전화, PC)
- (개 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표하여 그 결과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

III. 협약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에 사용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하 ‘시스템’)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추천위원회가

위탁 범위, 이용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투표시스템(또는 '시스템')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구축·개발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과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온라인투표서비스(또는 '서비스')란 선관위가 이용을 승인한 선거에 대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이용기관 관리자 교육, 투표·개표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사이트'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pub.kvoting.go.kr>)를 말합니다.
4. '이용기관 관리자(또는 '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로, '선관위'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은 '선관위'의 '이용기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5. '이용자'(또는 '선거인')란 '시스템'에 업로드 된 선거인명부등재자(투표하는 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협약서 효력 및 변경

1. '선관위'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스템' 및 '서비스'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추천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협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 '추천위원회'는 '시스템'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3. '선관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지원내용,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선관위' 위탁관리 범위와 그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책무

제4조 위탁관리 범위

1. '선관위'의 위탁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관리기간은 선관위가 위탁신청서를 접수완료 한 때부터 투표·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결선투표 사유 발생 시 결선투표·개표 종료시까지

나. '시스템'에서의 이용신청서 작성(작성시 '선관위' 이용관리자 지정 포함)

다. '시스템'에서의 선거개설(선거인명부 업로드, 후보자 표출화면 작성 등 전반에 대한 사항)

라. 온라인 투표 및 개표 관리

2. '선관위'는 제4조제1호의 범위 중 '추천위원회'가 투표 표출화면, 투표율 등 투표진행 상황, 문자메시지 발송상황 등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5조 '선관위'의 위탁관리를 위한 '추천위원회'의 책무

1. '추천위원회'는 선정규정 제1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 외에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샘플양식(파일형태 : 엑셀파일)에 따라 '시스템' 업로드용 명부(이하 '명부 엑셀파일')를 작성하여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제출한 '명부 엑셀파일'에 대한 시스템 반영 여부를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명부 반영에 대한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에 통보 예정

2. '추천위원회'는 본 '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통보한 명부반영 상황을 참고하여 정비 후 선거인명부 확정 '명부 엑셀파일'을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 통보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 반영 후 선거인 성명, 휴대전화번호의 오기 등이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문서요청으로 명부를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추천위원회'는 시스템 결정사항 중 '투표기간 중 선거인명부 수정' 기능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문서요청으로 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수정 시 삭제, 추가는 불가하고 '선거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정보 등 오기에 대하여만 수정 가능).
5. '추천위원회'는 위 1~4호 외에 '선관위'에서 안내하는 '[시스템 이용에 따른 결정사항(협이에 따라 후보자정보입력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자료로 '선관위'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개설을 실시합니다.

제6조 '시스템' 이용 거절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스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5. '선관위'가 지원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선관위'가 업무 등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선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시스템' 및 '서비스' 종료

1. '선관위'는 '시스템'으로 개표처리 후 선거인 신분(교원, 직원, 조교, 학생)별 반영비율을 적용한 개표결과를 지체없이 '추천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개표상황표는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까지만 출력가능

2. 선거가 종료된 즉시 '선관위'는 투표여부가 표시된 현황(엑셀 파일)을 '추천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투표 종료 후 7일이 지난 후에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이용은 종료되며,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4. 결선투표 사유발생 시 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8조 이용의 정지 등

1. '선관위'는 '추천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가. '추천위원회'가 투표에 대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추천위원회'가 본 협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추천위원회'가 본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이용수수료 등 관리비용

제9조 이용수수료 등 관리비용

1. '선거'에 따른 이용수수료 등 관리비용은 '추천위원회'가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집행잔액(집행내역서 포함)을 '추천위원회'에 반납합니다.

※ 추가 문자수수료가 발생 될 경우 우선 선거관리경비의 가용예산으로 처리하되 부족 시 추가 납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8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추천위원회'는 이용수수료 등 관리비용 납부 후 당해 규정 등에 따라 '선거' 미실시 사유발생과 '시스템'의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수수료 등 관리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사유발생 전까지 정당하게 집행된 관리비용은 미반환) 다만, '추천위원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제10조 '추천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추천위원회'는 열람용 선거인명부가 아닌 '시스템 업로드용 엑셀파일'은 외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인' 누락,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잘못된 '선거인' 정보(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수집으로 인한 책임은 '추천위원회'가 부담합니다.

제11조 '선관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시스템 업로드용 엑셀파일' 포함)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선관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선거인명부 유출 시 '추천위원회'는 '구미시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선관위'는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투표종료 1주일 후 모두 파기합니다.

제5장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선관위'의 의무

1. '선관위'는 '서비스'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에게 '시스템' 사용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2. '선관위'는 '시스템'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제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장애가 즉시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3.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표·개표 과정의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에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습니다.
4.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상태나 선거인의 단말기 하드웨어·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추천위원회'에게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추천위원회'의 의무

1.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계기 등을 이용하여 투표절차, 방법 등을 '선거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선거인'의 단말기 하드웨어·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선거인'등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유사 시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본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선거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유의사항 등을 몰라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추천위원회'는 투표절차 및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선거’에 적용되는 자체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5. ‘추천위원회’는 개표 시 ‘후보자’별 2인씩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제6장 이의제기 및 서비스 관련 분쟁

제14조 면책조항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선관위’의 ‘시스템’ 위탁관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추천위원회’ 및 ‘선거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이 있는 경우
4.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선거인’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른 장애의 경우
6. ‘선거인’의 단말기 사양 및 설정상태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제15조 협약서 외 사항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중앙선관위 지침,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중앙선관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3. 기타 정책 또는 이용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서비스 관련 분쟁

1.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이의제기, 소송제기(손해 배상청구 등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선관위'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2. 선거인명부 관련 논란과 통신장애, 휴대폰기종 및 설정차이, 인터넷 브라우저버전, 스팸메일 처리 등 기술적 문제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선관위'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추천위원회'관계자 등 누구라도 '선관위'의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관위'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선거' 무효 등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아니하며, 이의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위원회'에 대하여 하거나 '추천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4.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와 '추천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관위'와 '추천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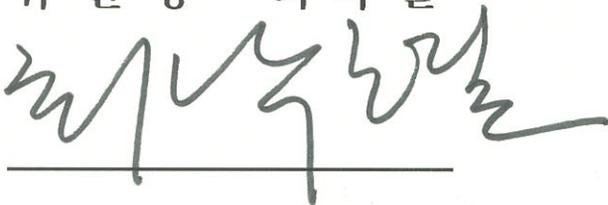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위탁선거관리 협의서

본 협의를 통해 약정한 내용은 이번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으며, 양자는 위 협의서의 내용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본 협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협의서
2부에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6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최낙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명수

